

항소이유서

사 건 98나4608호 전환사채발행무효
원 고 장 하 성
피 고 삼성전자주식회사

위 사건에 관하여 원고소송복대리인은 별지와 같이 항소이유를 개진하는 바입니다.

1998. 4.

위 원고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김 진 욱

서울고등법원 제1민사부 귀중

1. 이건 전환사채의 발행에 관하여 피고회사는 1997. 3. 24. 이사회를 개최한 사실이 없는바, 전환사채의 발행여부 및 그 전환조건의 결정은 이사회 결의사항이므로 이사회결의가 없는 이건 전환사채의 발행행위는 무효라 할 것입니다.

가. 이사회 의사록(을제1호증)의 위조

(1) 피고회사는 1997. 3. 24. 이사회를 통하여 이건 전환사채를 발행하였다고 주장하며 그 증거로 이사회 의사록(을제1호증)을 제시하였으나, 이는 위조된 것입니다.

(2) 위 이사회 의사록에 의하면 피고회사 제적이사 59명중 32명이 1997. 3. 24. 10:00부터 11:00까지 사이에 피고회사의 본사회의실에서 피고회사의 대표이사 사장인 소외 윤종용이 의장으로 된 이사회에 참석하여 출석이사 전원의 찬성으로 이건 전환사채발행에 관한 결의를 한 것으로 되어 있으나, 위 의사록상에 출석이사로 기명날인되어 있는 자중 이사 강영문, 이사 이성주, 이사 김택희, 이사 구본국 이상 4명은 당시 국외 여행중이었고, 이사 김경기는 위 이사회결의일 당일 출국하여 이들 모두는 위 이사회에 출석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였으므로(갑제31호증의 1,2 참조) 위 이사회 의사록상의 위 5명의 기명날인은 위조된 것이 분명합니다.

(3) 을제1호증에 대한 진정성립인정의 취소

원고는 위 을제1호증에 관하여 원심에서 그 진정성립을 인정하였던 바, 앞서본 바와 같이 위 을제1호증은 사실과 다르고 원고는 착오로 이를 인정한 것이므로 이에 진정성립인정을 취소합니다.

자물인대(갑제31호증 제 12 장조) 위 일자는 토요일이므로, 이틀에 대하여는 필요일인 같은날 24 10:00-11:00에 열릴 위 이사회에 대한 위 정관 제30조 제1항에 정한 바, 이사회결의의 불성립 하였을 것임이 불립함이 이사회 5인이 이견 이 사회에 참여하였다는 것은 전혀 증명성이 없으며,

(1) 이사회결의요건 및 이사회 소집절차

이상의 정에서 이견 전문사제발행에 관한 이사회는 회의조각 열리지 않았 위 이사회결의일 당시 피고회사의 제적이사는 총59명(갑제3호증)이고, 피고회사 정관(갑제8호증) 제31조에 의하면 이사회결의는 “이사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이사과반수로서 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므로 이사회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30명 이상의 이사가 출석하여야 합니다.

한편 피고회사 정관 제30조 제1항에 의하면 “이사회는 의장이 소집하며, 의장은 회일을 정하여 늦어도 12시간전에 각 이사 및 감사에게 통지하여야”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와 같이 피고회사가 이에 관한 이사회를 열지도 않은바, 서류상으로는 이사회가 있는 듯 무어, 이견 전문사제를

(2) 이사회결의 불성립

그런데 앞서 본바와 같이 의사록상에 출석이사로 되어 있는 자들 중 위 강영문 등 5명은 이사회 출석자체가 물리적으로 불가능하였던 바, 이들 5명을 제외하면 출석이사수는 27명밖에 되지 않으므로 위 의사록상의 이사회는 제적이사 과반수의 출석이 없어 결의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이고,

한편 위 의사록상에 참석이사로 되어 있는 자들 중 이사 이윤우, 이사 이해민, 이사 임형규, 이사 이상완, 이사 임종성 이상 5명은 위 회의일 전 해외 여행중이었다가 이틀전인 1997. 3. 22. 입국한 자들인데(갑제31호증의 1,2 참조) 위 일자는 토요일이므로, 이들에 대하여는 월요일인 같은달 24. 10:00-11:00에 열릴 위 이사회에 대한 위 정관 제30조 제1항에 정한 회의 소집통지 조차 불가능하였을 것임이 틀림없어 이상의 5인이 이견 이사회에 참석하였다는 것은 전혀 신빙성이 없는바,

이상의 점에서 이견 전환사채발행에 관한 이사회는 회의조차 열리지 않았던 것임이 분명하고,

다.이견 전환사채인수인들의 고의 내지 과실

이견 전환사채인수인인 소외 이재용은 피고회사를 지배하는 소외 이견회의 외아들이고, 소외 삼성물산 또한 위 이견회가 지배하는 회사인바, 이들 모두는 이견 전환사채를 인수함에 있어 피고회사가 이에 관한 이사회를 열지도 않은채 서류상으로만 이사회가 있는 듯 꾸며 이견 전환사채를 발행한 것임을 알았을 것이므로,

라.이견 전환사채발행행위의 무효

이상의 점에서 피고회사의 이견 전환사채발행행위는 무효라 할 것임이다.

항소이유서

2. 한편 이건 전환사채발행행위는 그 근거로 된 정관 자체가 상법 제513조 제3항에 반하여 무효이고, 또한 기존주주의 전환사채인수권을 부당히 침해하는 불공정한 발행이란 점에서도 무효인바, 이상의 점들에 대하여 원고는 원심에서의 변론을 재차 원용하며, 사실오인이나 법리오해가 있는 원심법원의 판단에 대하여는 추후 진술하고자 합니다.

입증방법

갑제31호증의 1

2

출입국사실조회에 대한 회신

개인별출입국현황

첨부서류

위 입증방법

각 1통